[서식1] 기술닥터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신청서

기업 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설립년월일	
	상시종업원수	명	업 종	
	주소(도로명)			
	주요제품			
	주요 분야	☐ 의료기기 ☐ 의약품 ☐ 진단·검사 ☐ 디지털 헬스케어 ☐ 의료 AI·데이터 ☐ 관련 소재·부품·소프트웨어 ☐ 기타()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e-mail			
프로그램	자문분야	☐ 지식재산·품질 (특허 출원등록, GMP 인증, 품질문서 구축 등) ☐ 시험분석·인증 (시험분석, 의료기기 인허가 및 인증)		
		☐ 마케팅·해외진출 (마케팅, 해외수출상담, 글로벌마켓 입점) ☐ 사업화·경영 (사업화 전략, 투자유치, 유망기업 성장전략)		
		☐ 기타 ()		
공급기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대표전화	
	업 종		소 재 지	
	※ 공급기업: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함. (개인 자문료, 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 불가)			

소요 예산 *공급가액만 해당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1,500,000원	ex) 3,000,000원	ex) 4,500,000원
	※ 지원금은 기업당 1,500천원(VAT 별도)이며, 부가가치세와 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또한 본 신청서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선정취소 및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수행계획서

신청 내용	컨설팅 과제명	
	애로기술 및 현황	※ 제품·기술 개발 현황과 현재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작성
	컨설팅 주요 내용	※ 애로기술 해소를 위해 받고자 하는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세부 내용과 결과물 도출 내용 작성
	컨설팅 결과물	※ 컨설팅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결과물(기술 검토보고서, 시험분석 결과, 인증 관련 검토자료, 사업화 전략자료 등)을 작성
	기대효과	※ 컨설팅 완료 후 기대되는 효과 및 후속 활용 계획 작성

※ 칸 크기는 작성 분량에 맞춰 조정 가능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부산대학교병원은 「2026년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 및 관리를 위해 신청기업에 대해 아래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해당 용도로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

수집·이용 목적	서류 적정성 검토, 과제 참여인력 확인 및 의사소통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팩스번호, 주소, 학력, 경력, 소속(회사명, 직위, 부서), 보유 자격증 등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5년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용

제공 목적	서류 적정성 검토 및 행정사무감사 등 상위기관 결과보고
제공 항목	성명, 생년월일, 이메일, 전화/팩스번호, 주소, 학력, 경력, 소속(회사명, 직위, 부서), 보유 자격증 등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	운영기관 및 상위기관(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청)
제공 기간	5년

3.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기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제공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정보자료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3]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 참여확약서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컨설팅 과제명			
공급기업명		자문분야	

사업비 (공급가액)	지원금(A)	기업부담금(B)	총 컨설팅비용(C=A+B)
	원	원	원

※ 사업비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 기준이며, 신청서의 소요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작성합니다.

※ 지원금(A)은 기업당 1,500,000원이며,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 초과분은 참여기업이 부담합니다.

본 기업은 부산대학교병원「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사업」기술닥터(전문컨설팅) 프로그램(부산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공고 제2026-005호, 이하 "공고문")에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제1조(협약 갈음 및 협약기간)

① 본 기업이 지원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이 확약서로 운영기관과 본 기업 간의 협약을 갈음한다.

② 협약기간은 선정 통보일부터 2026. 12. 10.(목)까지로 한다.

제2조(사업 수행)

① 본 기업은 공고문, 신청서(수행계획서 포함) 및 운영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기간 내에 컨설팅을 완료한다.

② 공급기업과의 계약 체결과 컨설팅 수행은 선정 통보일 이후에 한다. 선정 통보 이전에 체결한 계약이나 수행한 컨설팅 비용은 지원받지 않는다.

③ 본 기업은 공급기업과 과업내용을 포함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컨설팅 완료 후 자문결과물 또는 컨설팅 수행일지 등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④ 신청서에 적은 컨설팅 분야·내용·공급기업·사업비를 바꾸려면 협약변경 승인요청 공문을 제출하여 사전에 운영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⑤ 정당한 사유로 사업을 포기하려는 경우 지체 없이 운영기관에 서면으로 알린다.

제3조(비용 집행 및 정산)

① 본 기업은 컨설팅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운영기관의 결과물 및 증빙 검토를 거쳐 적정성이 인정된 금액을 지원금으로 사후정산 받는다.

② 지원금은 공급가액 기준 150만 원 이내로 한다. 부가가치세와 지원한도를 넘는 금액은 본 기업이 부담한다.

③ 지원 대상은 컨설팅(자문) 용역비에 한정하며, 특허 출원·등록 관납료, 인증·인허가 수수료, 시험·분석 수수료, 전시회 참가비, 장비·재료 구입비, 출장·여비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을 확인한다.

④ 본 기업은 공급기업으로부터 본 기업을 수신자로 한 견적서를 받으며, 총 계약금액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 비교견적서를 함께 받는다.

⑤ 컨설팅 비용은 본 기업 명의 계좌에서 공급기업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고, 공급기업으로부터 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서를 발급받는다. 이체확인증 등으로 집행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비용은 지원받지 않는다.

⑥ 본 기업은 공고문에서 정한 정산 제출서류를 2026. 12. 10.(목)까지 모두 제출한다.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증빙이 미비하여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⑦ 지원금은 본 기업 명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제4조(공급기업 요건 및 특수관계 거래 금지)

① 공급기업은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 또는 기관으로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야 하며, 개인 자문료·기타소득 지급 방식은 지원받지 않는다.

② 본 기업의 대표자·임직원 또는 그 가족이 운영하거나 지분을 가진 컨설팅 기업과는 계약하지 않는다.

③ 공급기업에 지급한 대가의 일부를 돌려받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지 않는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및 자격요건 확인)

① 본 기업은 같은 과제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에 중복 지원 중이 아니며, 최근 3년 이내에 같은 과제로 지원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

② 본 기업은 공고문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지 않음을 확인한다.

제6조(점검 및 성과조사 협조)

① 운영기관 및 상위기관(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서구청)이 사업 수행 중이나 완료 후에 실태조사, 현장점검, 자료 제출을 요청하면 성실히 협조한다.

② 사업 종료 후 운영기관이 실시하는 성과조사(비용절감액, 매출액, 고용창출 효과 등)에 성실히 응한다.

제7조(지원금 미지급·환수 및 제재)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운영기관의 지원금 미지급 또는 환수 결정에 따른다.

1. 제출서류나 사업 결과물을 허위로 제출·보고한 경우
2. 지원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3. 운영기관의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바꾸어 수행한 경우

4. 제4조 또는 제5조를 위반하거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청구한 경우

5. 지원 대상이 아닌 비용을 청구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결과보고서 등 자료 제출에 따르지 않은 경우

② 본 기업은 제1항에 따른 환수 결정에 동의하며, 이미 받은 지원금은 운영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반환한다.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으면 운영기관이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

③ 본 기업은 지원금 부정 청구 등이 확인되면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고, 앞으로 운영기관의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제8조(성과 활용)

본 기업은 운영기관이 성과관리와 홍보를 위해 결과보고서 등 사업 성과를 활용하는 데 동의한다. 다만, 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한다.

제9조(기타)

이 확약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고문과 운영기관의 해석·안내에 따른다.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부산대학교병원장 귀하

[서식4]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공간 입주의향서(업력 4년 이내 예비(초기) 창업만 해당)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공간 입주의향서

의료 · 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조성 공간 개요 [`26년 12월 완공 예정]

1. 위　　치: 송도자이르네디오션 상가 지하 4,5,6층 (부산광역시 서구 암남동 115-18번지)
2. 모집기간: 2026. 11. 02.(월) ~ 11. 30.(월) 24:00까지
3. 시설배치

▶ 지하4F	- 초기창업기업 입주공간(15~20㎡) - 개방형 제작공간 및 탕비실
▶ 지하5F	- 예비창업기업 입주공간(8~12㎡) - 휴게 공간 및 탕비실
▶ 지하6F	- 제품 전시 및 체험 공간(60㎡) - 공용 회의실 2개소 및 사무실 등



입주공간 디자인 투시도(안)



상가 전경 사진

상기 기업(또는 예비창업자)은 2026년 12월 준공 예정인 「의료·헬스케어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입주 공간에 입주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며, 향후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절차에 따라 입주를 신청하고자 합니다.

입주 확약 및 신청 내용		
입주유형	□ 예비창업기업	□ 초기창업기업

회 사 명 (예 정)
업　　종:
주　　소:
연 락 처:
이 메 일:
대 표 자:　　(인)

2026년　　월　　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 귀하